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2년 9월 14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92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(휴직) 제2항 중 “휴직 신청 당시”를 “휴직 신청 당시 임신중인 여성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”로 한다.

제40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제1항 중 “제40조제2항2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” 을 “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”로 하고 단서를 ”다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“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황 기 성 (3 9 0 - 7 6 1 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휴직) ① (생 략)	제40조(휴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휴직 신청 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)을 신청한 경우</u>	<u>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</u>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0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	제40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① 사장은 <u>제40조제2항2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<u>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</u> <u>다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기간 단축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